기금운영 규정

제정 2021. 06. 09. 개정 2021. 12. 2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남양주시체육회(이하"본회"라 한다) 정관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1, 12, 21,)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여유자금"이라 함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자금 이외에 기금증식 등을 위하여 운용하는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기 자금(현금성 자금, 유동성 자금)과 장기 자금으로 분류한다.
- 2. "현금성 자금"이라 함은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예탁한 자금을 말한다.
- 3. "유동성 자금"이라 함은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예탁한 자금을 말한다.
- 4. "장기 자금"이라 함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예탁한 자금을 말한다.
- 5. "기금관리자"라 함은 기금의 관리·운용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. (개정 2021, 12, 21.)
- **제3조(운용방법)** 여유자금은 정관 제4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(개정 2021. 12. 21.)
- 제4조(여유자금 운용계획수립) ① 기금관리자는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까지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기금의 운용방향
- 2. 기금의 수지계획
- 3. 자산운용전략 및 배분계획
- 4. 기타 필요한 사항
- 제5조(금융기관 등의 범위) 기금을 예치하는 금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으로 한다.
 - 1. 「은행법」에 의한 은행 및 특수은행
 - 2. 증권회사
 - 3.「간접투자자산 운용법」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자산운용회사
 - 4. 종합금융회사
 - 5.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
 - 6. 「기금관리기본법」제12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연기금통합펀드
- 제6조(금융기관의 선정) ① 예치대상 금융기관은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되, 가급적 다수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 과도한 예금 유치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.
 - ② 금융기관 예치는 선정된 금융기관의 본점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지점에 예치할 수 있다.
 - ③ 기금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, 예치대상 금융기관의 신용도, 재무건전성, 자산규모,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
- 제7조(금융상품의 선정)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금융상품은 공공성, 안정성, 수익성 및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.
- 제8조(예치기준) 여유자금의 예치는 최소 5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, 기금별로 금융기관별 세부예치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- 제9조(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도) 기금관리자는 기금의 안정성을 위하여 허용위험도를 만족하는 수준에서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이를 연간 여유자금운용계획에 포함시켜 운용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유가증권투자) ① 기금관리자는 주식, 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투자위험을 고려하여 한도액을 설정하고, 이를 연간 여유자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② 기금관리자는 주식, 채권 등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세부 투자기준을 정하여 운용하되,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혹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다.
- 제11조(기금의 선량한 관리) ① 기금관리자는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선량 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- ② 기금관리자는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, 기타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2조(위험관리) ① 기금관리자는 예탁상품에 대하여 투자위험(시장위험, 신용 위험 등)을 줄이기 위하여 매분기별로 운용자산의 안전성을 점검하여야 하며, 점검결과에 따라 예탁자금을 회수하거나 예탁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.
 - ② 기금관리자는 위험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관리·통제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심의위원회 운영) 여유자금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.
 - 1. 여유자금운용정책에 관한 사항
 - 2. 연간여유자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- 3. 금융기관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- 4.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
 - 5. 기타 여유자금운용과 관련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